

나만의 작은 속삭임을 큰 외침으로 만들어 준 언론중재위원회



김 정 훈(가명) 회사원

기사를 작성했던 담당 기자와 통화를 하며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만큼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상대적 약자인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절망했다.

막막함과 허탈감 그리고 분노가 뒤엉켜 한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다가 기자가 고작 일반 개인의 위치에서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듯 조롱하는 말투로 나에게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다. ‘저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라고 표기를 했는데 과연 이 기사상에서 본인이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내용 또한 제 추측이 아닌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작성된 기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으니 이의가 있으시다면 언론중재를 신청하시던가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에 언론중재라는 단어를 검색하니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었다. 언론중재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략적인 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조정신청

서 양식과 작성사례를 다운받아 정독을 했다. 개인적인 검토가 끝난 뒤 중재위원회로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재차 중요사항과 절차를 확인 후 바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발송했다.

내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생소한 곳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한 이유는 신문사인 B사의 지면과 인터넷 기사 중 실명으로 표기는 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다수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처리된 A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정됐으며, 사실이 아닌 추측성의 내용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작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조정·중재사례집을 통해 기자가 얘기했던 ‘특정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기사상에서 A가 나라고 특정됐다고 판단한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 상담 직원과의 통화로 재차 확인 후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며칠 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기사를 처음 보고 나와 통화했던 당시 무관심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던 기자의 말투가 많이 다급해져 있었다. 정말 신청을 하실 줄은 몰랐다면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겠으니 조정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솔직히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까지

도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나를 도울지라도 거대한 신문사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억울함을 어느 곳이든 알려 호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니 막연하기만 하던 언론중재 위원회라는 곳에 대해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기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언론조정 신청을 취소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 번 다쳤던 내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해집어 놓은 이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라 생각되어 거절했다.

다시 며칠 후 나의 조정신청 내용에 대한 B사의 최종 답변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리고 다시 나에게 전해졌다. 마음을 가다듬고 답변서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제안 받았던 조정 취소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인지 답변서에는 격한 어투로 조정신청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는 날 마지막으로 발인 내용을 정리하며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니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가 아닌 해당 부서의 차장이 B사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곧 시작된 조정에서 다섯 분의 중재 위원들은 나와 B사 양측의 견해를 듣고 난 후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며, 큰 의미는 아니었으나 경중을 울리는 의미로 했던 200만원의 손해배

상 청구에 대해서도 100만원으로 조정을 하자고 건의를 해주셨다.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에 대해 B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7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에 자동으로 소제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지막 일주일 이 채 지나기도 전에 B사 차장으로부터 지면과 인터넷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하는 동시에 위원들께서 조정해 주신 합의금 또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터졌던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니 ‘과연 나 혼자였다면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마도 거대한 매스컴을 상대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하려 노력하는 중재위원님들과 양자간 의견 조율을 위해 수고스러운 일을 담당해 주신 조사관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고 써버린 기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

BOOK 이달의 책

말의 가격



앙드레 슈프랭 지음 | 사회평론 | 208페이지

세계적인 출판인으로 비영리 인문사회 출판사 ‘뉴 프레스(New Press)’를 이끌고 있는 앙드레 슈프랭은 자본이 미디어를 위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시도된 미디어 정책과 실험 등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미디어 그룹의 등장을 꼽는다. 신문사와 출판사를 인수한 대형 미디어 그룹의 경영자들이 미디어의 고유한 특성이나 개성, 공적 역할을 존중하지 않은 채 수익이 높고 이윤이 보장되는 책들의 판매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통적 신문의 활약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은 독자를 되찾아오고, 신문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힌다. 더불어, 노르웨이 사례를 본받아야 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5년 구성된 ‘인문학평의회’는 출판사로부터 일정 권수만큼 구입해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데, 220종의 소설, 100종의 번역소설, 70종의 논픽션, 14개의 문화 관련 잡지를 구매한다고 한다.

결국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미디어의 공공성’이다. 구글과 아마존이 울리고 있는 수익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돈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